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674
----------	------

2026년 6월 1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호진 의원 외 10명

나. 제출일자 : 2026. 5. 26.

다. 회부일자 : 2026. 5. 27.

라. 상정결과

○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6년 6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호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 제7호의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5. 30. ~ 2026. 6. 3.
- 제출의견 : 의견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제출의견 : 원안가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확산이라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1) 주차계획과-23905('26.6.2.) “제336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화<sup>2)</sup>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임산부 등 영유아 양육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서울시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sup>3)</sup> 및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sup>4)</sup>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지원, 산후조리 경비지원,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등의 사업<sup>5)</sup>을 수행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임산부 앱카드<sup>6)</sup> 등 임산부

2) 저출생의 그늘...어린이집 재원아동 수 80만명 무너져 뉴시스 (2026.4.24.)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서울 정책 아카이브)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공영주차장<sup>7)</sup>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 시설이라는 점에서 임신부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은 교통약자인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부산·인천시 등 타 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동대문·강동구 등에서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부 탑승차량에 대해 50~100%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sup>8)</sup>을 시행 중

사업명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대중교통 이용지원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임신부	교통비 지원 및 공공기관·대중교통 인프라 내 배려공간 조성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서, 서울시 출생 등록,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임신으로 고민·갈등이 있는 누구나	24시간 비밀 상담, 시설·기관 연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6) 임신부 앱카드 개요(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여성가족실)
- 정의: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임신부 배지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
  - 대상: 임신 중 혹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임신부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정의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도 임산부 감면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 등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 개선 등 용역9)’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감면 항목 간의 우선순위, 감면 비율의 형평성 및 감면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8)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시 자치구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현황

구분	지자체명	감면내용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100 퍼센트 면제
	부산광역시	50 퍼센트 경감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강동구	50 퍼센트 경감
	도봉구	
	양천구	
	동대문구	

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 개선 등 용역(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477호)(2026.5.19.)

- 기간: 계약체결일~2026.12.31.
- 사업비: 1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의 목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이고 12개 유형의 주차요금을 감면 중이나, 다양한 이해집단에서 주차요금 감면 요청 중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함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 수립('16년) 이후 주차장 생태환경의 변화 등으로 위탁대상 선정 시에 현재와는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 일부 존재함
- 과업 공간범위: 서울시 공영주차장(건립 중인 주차장 포함)
- 과업 시간범위: '24.1.~'26.3.
- 과업의 내용
  -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분석·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 공영주차장의 직영 및 민간위탁 대상 선정기준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효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7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5월 26일  
발 의 자: 이효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길영,  
김원태, 김태수, 남창진,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황유정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다. 기타 : 법제과 의뢰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 받았으나, 기획경제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 받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3.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7조제1항제7호의3	△	[기술적 추계 곤란] 임신부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관련 통계 부재와 구체적인 이용 수요 예측 불가로 객관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 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혜택 적용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 부서(교통실 주차계획과) 문의 결과 기존 시설 이용 현황 중 임신부를 별도로 분류한 기초 통계가 부재하고, 정책 시행 이후 임신부 입장객 유입 규모와 이용 빈도 등 구체적인 수요 변화를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참고] 입장료 등 감면 대상 임신부는 2026년 약 51,000명<sup>1)</sup>으로 추산됨

**임산부 예측치 = '26년 예상 출생아수\*(38,000명) × 보정률(134%)\*\***

\*국가데이터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별), 서울시

\*\*장래인구추계 기준 '24년 예상 출생아수(35,000명) 대비 실제 임신부 교통비 지원 인원(46,820명)

1) 2026년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 개선계획(저출생담당관-12406, '25.10.28.)

#### 4. 작성자

시 의 회 사 무 처    재 정 분 석 과

재 정 분 석 과 장    이 선 희

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